

# 2021년도 제21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시: 2021. 8. 12.(목),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4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신창환(분과위원장), 김연희 위원, 심장섭 위원, 위정현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1-205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 II. 회의내용 및 결과

###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3,245건(안건번호 제2021-98749호~100816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98749호~98779호(순번 1번~31번), 98781호~98788호(순번 33번~40번)는 블로그와 카페에서 일본 영상물(방송·영화)을 스트리밍으로 제공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안건번호 98753호, 98763호, 98765호, 98768호, 98781호(순번 5번, 15번, 17번, 20번, 33번)는 삭제되어 현재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지 아니하여 삭제·전송중단의 대상이 더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가결함. 또한 안건번호 98780호(순번 32번)는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라 저작권자의 요청에 의해 전송중단이 이루어졌으므로, 보호원의 추가적인 시정권고가 불필요하여 부결함.

안건번호 98789호~98793호(순번 41번~45번)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최신 만화를 제공한 사안으로, 해당 만화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98794호~100816호(순번 46번~2068번)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3,126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

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Ⅲ. 회의 의사록

#### 1. 개회선언

- 신창환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211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 2. 전차(제2021-205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오진해 전문위원: 제1호 안건인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 내 저작물명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 및 기타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B 위원: 제1호 안건에서 저작물명 등은 심의대상 게시물이 특정될 수 있으므로 비식별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A, C,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오진해 전문위원: 제2호 안건 회의록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2호, 제5호에 따라 전체 비공개하고 쪽수만 기재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음.
- 참석 위원 전원: 동의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등 심의대상 게시물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을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부분인 9쪽부터 12쪽까지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2호, 제5호에 따라 비공개함.

### 3. 안건상정

####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제1항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으신 위원은 해당 심의에서 제척됨. 각 심의안건에 대하여 제척사유 있으신 위원님께서서는 해당 안건 심의시 사유를 밝히고 회피하여 주시기 바람.
- A, B, C, D 위원: 해당 없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오진해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47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3,245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순번은 1번~2068번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1번~40번은 실명(2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네이버 블로그와 카페에서 일본 애니메이션(방송) ‘☆☆☆☆☆’, ‘★★★★★’, ‘○○○○○’ 등과 애니메이션(영화) ‘●●●●●’ 등을 우리말 자막 또는 더빙 등과 함께 제공한 사안임. 총 47개의 게시물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 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순번 1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 방송 ‘◎◎◎◎◎’ 전체 분량을 우리말 더빙과 함께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였음.  
 (순번 10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 방송 ‘◇◇◇◇◇’ 전체 분량을 우리말 자막과 함께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였음.  
 (순번 15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 방송 ‘◆◆◆◆◆’ 전체 분량을 우리말 자막과 함께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였음.  
 (순번 32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 방송 ‘□□□□□’ 전체 분량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였음.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함.

순번 1번, 4번, 8번, 9번, 18번, 19번, 25번, 30번 게시물의 경우 2021. 8. 9. 기준 비공개로 전환된 것이 확인됨. 다만 이 경우 게시물이 삭제·전송중단된 경우와 달리 시정권고의 대상인 심의대상 게시물이 계속하여 존재하고 있는 점, 서로이웃을 맺은 범위의 공중에게 계속하여 제공되고 있을 가능성이 예상되는 점, 언제든지 전체공개 전환을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전체공개 게시물과 동일하게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또한, 순번 2번, 40번의 게시물(카페)과 순번 10번, 26번, 31번의 게시물(블로그)은 2021. 8. 9. 현재 각각 '■■■■■■■ 이용약관 및 서비스 운영정책에서 제한하고 있는 목적으로 개설되었거나 제한 대상 게시물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접근이 제한되었다'는 안내가 출력되고 있음. 현재는 각 심의대상 게시물에 접근할 수 없으나, 향후 접근제한 해제에 의하여 다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접근이 가능한 게시물과 동일하게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순번 5번, 15번, 17번, 20번, 33번(7건)의 게시물은 2021. 8. 9. 현재 게시자에 의해 삭제되어 삭제·전송중단의 대상이 더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함이 타당함(경고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

순번 32번(4건)의 경우 2021. 8. 9. 기준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라 저작권자의 요청으로 게시중단되었음이 확인됨. 다.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시정권고 제도가 제103조의 복제·전송의 중단 요청과 그 취지를 달리하는 것이기는 하나, 저작권자가 직접 권리를 행사하여 ①시정권고의 '전송중단 및 경고'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지닌 '전송중단 및 중단내역 통지'가 이루어졌고, 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 입장

에서도 시정권고와 동일하게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지하여  
향후 블로그 접근제한 등 자체 제재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  
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보호원의 추가적인 시정권고는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됨(부결 의견).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  
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  
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순번 1번~40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B 위원: 순번 1번~31번, 순번 33번~40번의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시정권  
고의 가결 의견임. 다만, 순번 5번, 15번, 17번, 20번, 33번의 경우 게  
시자에 의해 삭제되어 현재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지 아니하나  
복제·전송자에게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하기 위하여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또한, 순번 32번은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라 저작권자  
의 요청에 의해 이미 전송중단이 이루어졌으므로, 보호원의 추가적  
인 시정권고가 불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부결 의견임.
- A 위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  
공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시정권고의 요건을 충족함. 다만, 순번 32번

에 대해서는 저작권자 요청에 의한 조치가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부결하는 것이 타당함. 단, 이미 삭제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을 함이 타당함.

- C, D 위원: 이견 없음. 순번 32번을 제외한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합당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32번은 부결하고, 순번 1번~31번, 순번 33번~40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41번~45번은 실명(1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불법 복제한 만화를 유료로 웹하드 사이트에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 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웹하드 사이트에서 만화 '△△△△△' 등을 각각 30포인트에서 50포인트 정도에 판매하고 있는 사안임. 총 7개 게시물임.  
(순번 41번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해당 저작물을 30포인트에 판매 중이며, 제1화~제4화 완결판을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여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

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순번 41번~45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B 위원: 해당 저작물은 현재 시중에서 판매 중인 만화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D 위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시정권고의 요건을 충족함. 가결 의견임.
- A, C 위원: 이견 없음.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41번~45번의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 순번 46번~2068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모두 불법 복제

한 영화, 방송, 음악,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 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출판 '황제의 외동딸'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76번은 웹하드에서 출판물 '황제의 외동딸'을 50포인트에 제공 중임. 50포인트에 제공 중임. 제1편~제5편 완결판을 스캔본으로 제공하고 있음. 2013~2014년에 발간한 소설로 네이버 시리즈온에서 정식이용이 가능함.

(방송 '완다비전'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695번은 모바일웹하드에서 방송 '완다비전'을 1750포인트에 제공 중임. 제1화~제9화 완결판을 제공 중임. 디즈니+에서 2021. 1. 15. ~ 2021. 3. 5.에 방영한 드라마임. 디즈니+에서 정식이용이 가능함.

(음악 '과제곡(교수님 죄송합니다)'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1515번은 웹하드에서 음악 '과제곡(교수님 죄송합니다)'를 50포인트에 제공 중임. 전체 분량인 3분 49초를 제공하고 있음. 멜론에서 정식이용이 가능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순번 46번~2068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참석 위원 전원: 순번 46번~2068번은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음악,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특별한 쟁점없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 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46번~2068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98780호(순번 32번)는 부결함. 안전번호 제 2021-98749호~98779호(순번 1번~31번), 98781호~100816호(순번 33번~2068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4. 폐회 선언

- o 신창환 분과위원장이 제21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1년 제21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8. 19.

분과위원장 신창환

위원 김연희

위원 심장섭

위원 위정현